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0의6] <신설 2017. 1. 9.>

브레이크라이닝 기준(제112조의10 관련)

차 종	대 상	구 분	기 준	비 고
- 승용자동차 - 총중량 5톤 이하 승합자동차 - 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(피견인자동차 포함)·특수자동차	교환용 브레이크라이닝 어셈블리	전단강도	- 패드어셈블리 : 250 N/cm^2 이상 - 슈우어셈블리 : 100 N/cm^2 이상	
		압축성	- 패드어셈블리 : 상온에서 두께의 2%, 400℃의 온도에서 두께의 5% 초과하지 않을 것 - 슈우어셈블리 : 상온에서 두께의 2%, 200℃의 온도에서 두께의 4% 초과하지 않을 것	-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
- 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-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자동차(피견인자동차 포함)·특수자동차	교환용 브레이크라이닝 어셈블리	전단강도	- 패드어셈블리 : 250 N/cm^2 이상	- 패드어셈블리의 경우에만 적용
	교환용 브레이크라이닝 어셈블리 또는 교환용 드럼브레이크라이닝	압축성	- 패드어셈블리 : 상온에서 두께의 2%, 400℃의 온도에서 두께의 5% 초과하지 않을 것 - 슈우어셈블리 및 드럼브레이크라이닝 : 상온에서 두께의 2%, 200℃의 온도에서 두께의 4% 초과하지 않을 것	
		경도	해당 1개 부품의 마찰면에 대하여 5개 지점을 측정한 경도의 평균값은 제작사의 제작완료시 해당 5개 부품의 각 경도의 평균값과 동등할 것	

주 1. 브레이크라이닝 : 슈우 또는 백플레이트에 고정되기 위한 형상과 치수를 갖는 마찰재 구성부품을 말한다.

2. 슈우 : 브레이크라이닝을 지지하는 슈우어셈블리의 구성부품을 말한다.
3. 브레이크라이닝어셈블리 : 브레이크 마찰력을 생성하기 위해 디스크 또는 드럼 각각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마찰브레이크의 구성부품을 말한다.
4. 드럼브레이크라이닝 : 드럼브레이크를 위한 브레이크라이닝을 말한다.
5. 패드어셈블리 : 디스크브레이크의 브레이크라이닝어셈블리를 말한다.
6. 슈우어셈블리 : 드럼브레이크의 브레이크라이닝어셈블리를 말한다.
7. 전단강도 : 물체의 단면에 반대방향인 한쌍의 힘을 평행하게 작용시켜 물체를 절단하는 것으로 그 힘에 의해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말한다.
8. 압축성 : 물체에 압력이 가해질 때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.
9. 경도 : 물체를 다른 물체로 눌렀을 때 그 물체의 변형에 대한 저항력의 크기로서 표면의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.
10. 상온 :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온으로 일상적인 온도를 말한다.